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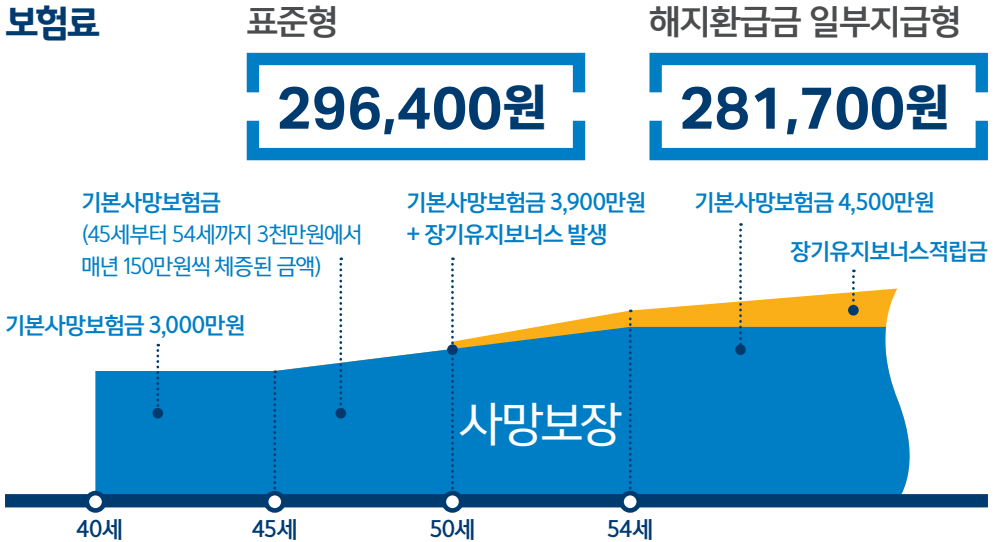
이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함께크는 종신보험

# 무배당 함께크는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상품안내

## ① 가입예시 ※ 가입예시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10년납, 월납



-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부터 종신까지 2.0%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적립됩니다.
-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 이 보험은 보험금이 체증하지 않는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금이 체증하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 상품 대비 금전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②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상품명칭	환급금 형태
무배당 함께크는 종신보험	표준형
무배당 함께크는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 이 보험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판매할 경우 상품명칭은 '무배당 함께크는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표준형으로 판매할 경우 상품명칭은 '무배당 함께크는 종신보험'으로 합니다.
- ※ 본 안내장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배당 함께크는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이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을 무배당 함께크는 종신보험(이하 "표준형")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보험료 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단위 : 원)

구분 가입나이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5년납	남자	523,800	573,600	630,900	510,600	558,900	614,400
	여자	501,900	549,000	604,200	489,600	534,900	588,300
7년납	남자	379,800	416,400	458,700	365,700	400,500	441,000
	여자	363,900	398,100	438,600	350,700	383,100	421,800
10년납	남자	270,000	296,400	327,600	257,100	281,700	311,400
	여자	258,600	282,900	312,300	246,300	269,100	296,700
15년납	남자	186,300	204,900	228,000	174,000	191,400	212,700
	여자	178,200	195,300	216,000	166,800	182,400	201,300
20년납	남자	145,800	161,100	180,300	136,200	150,300	168,300
	여자	139,200	152,700	169,500	130,200	142,500	158,100

※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장기유지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보험료 납입기간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시점	5년납	12 × 납입기간 × 주계약 보험료 × 18%
	7년납	12 × 납입기간 × 주계약 보험료 × 19%
	10년납	12 × 납입기간 × 주계약 보험료 × 20%
	15년납	12 × 납입기간 × 주계약 보험료 × 23%
	20년납	12 × 납입기간 × 주계약 보험료 × 26%

※ 보험기간 중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산출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를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에 가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적립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인출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험연도 기준 연12회까지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이 계약에 유니버셜특약을 부가했을 경우 유니버셜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 인출되며, 추가계약자적립금이 없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기본책임준비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 ※ 각 인출시점까지의 총 인출금액(유니버셜특약의 추가계약적립금 인출금액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유니버셜특약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포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입안내

**보험기간 : 종신**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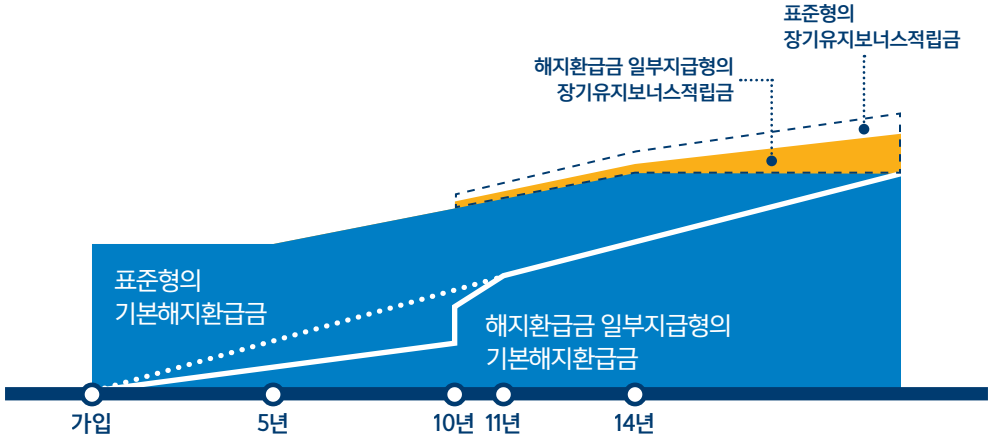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년납	만15세~51세	만15세~55세	만15세~51세	18세~55세
7년납	만15세~58세	만15세~61세	18세~58세	21세~62세
10년납	만15세~65세	만15세~65세	19세~63세	23세~65세
15년납	만15세~65세	만15세~65세	만15세~59세	16세~65세
20년납	만15세~60세	만15세~60세	만15세~53세	19세~60세

**지급기준**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가입시부터 체증시작시점(5년 경과) 이전 : 보험가입금액
	체증시작시점(5년 경과) 이후 : 보험가입금액에서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10년동안 체증된 금액(단, 사망시점까지 체증) +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

※ 단,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⑥ 표준형과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지환급금 비교 예시



※ 보험료 납입기간 예시 기준 : 10년납

※ 해지환급금은 기본해지환급금과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을 더한 금액이며, 기본해지환급금은 기본책임준비금에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지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 해지 시점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자세한 정의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시점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비율(납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됨)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환급률	101.3%	103.6%	106.6%	111.4%	115.1%

\*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포함)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동안 해지환급금은 점차 증가하여 1년 경과시점에는 ‘표준형의 기본해지환급금과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을 더한 금액’과 동일해집니다.

\* 상기 환급률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 : 표준형의 기본해지환급금과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을 더한 금액

## ⑦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5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6,883,200	4,234,200	61.5%	6,706,800	2,117,100	31.5%
3년	20,649,600	16,008,900	77.5%	20,120,400	8,004,600	39.7%
5년	34,416,000	34,450,980	100.1%	33,534,000	33,969,942	101.3%
7년	34,416,000	35,305,453	102.5%	33,534,000	35,140,279	104.7%
10년	34,416,000	36,630,248	106.4%	33,534,000	36,454,964	108.7%
15년	34,416,000	38,923,424	113.0%	33,534,000	38,729,897	115.4%
20년	34,416,000	41,341,693	120.1%	33,534,000	41,128,023	122.6%
30년	34,416,000	46,647,257	135.5%	33,534,000	46,386,795	138.3%
40년	34,416,000	52,142,076	151.5%	33,534,000	51,824,573	154.5%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7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996,800	2,602,800	52.0%	4,806,000	1,301,400	27.0%
3년	14,990,400	11,016,600	73.4%	14,418,000	5,508,300	38.2%
5년	24,984,000	19,764,600	79.1%	24,030,000	9,882,300	41.1%
7년	34,977,600	35,506,044	101.5%	33,642,000	34,853,112	103.6%
10년	34,977,600	36,843,117	105.3%	33,642,000	36,573,820	108.7%
15년	34,977,600	39,158,448	111.9%	33,642,000	38,861,123	115.5%
20년	34,977,600	41,601,179	118.9%	33,642,000	41,272,908	122.6%
30년	34,977,600	46,963,569	134.2%	33,642,000	46,563,409	138.4%
40년	34,977,600	52,527,658	150.1%	33,642,000	52,039,865	154.6%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1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556,800	1,445,400	40.6%	3,380,400	722,700	21.3%
3년	10,670,400	7,470,600	70.0%	10,141,200	3,735,300	36.8%
5년	17,784,000	13,726,200	77.1%	16,902,000	6,863,100	40.6%
7년	24,897,600	20,219,100	81.2%	23,662,800	10,109,700	42.7%
10년	35,568,000	36,904,200	103.7%	33,804,000	36,035,064	106.6%
15년	35,568,000	39,225,889	110.2%	33,804,000	38,836,369	114.8%
20년	35,568,000	41,675,639	117.1%	33,804,000	41,245,577	122.0%
30년	35,568,000	47,054,335	132.2%	33,804,000	46,530,093	137.6%
40년	35,568,000	52,638,302	147.9%	33,804,000	51,999,253	153.8%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15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458,800	663,300	26.9%	2,296,800	331,800	14.4%
3년	7,376,400	4,802,700	65.1%	6,890,400	2,401,500	34.8%
5년	12,294,000	9,092,400	73.9%	11,484,000	4,546,200	39.5%
7년	17,211,600	13,533,600	78.6%	16,077,600	6,766,800	42.0%
10년	24,588,000	19,909,500	80.9%	22,968,000	9,954,900	43.3%
15년	36,882,000	39,854,760	108.0%	34,452,000	38,379,528	111.4%
20년	36,882,000	42,369,963	114.8%	34,452,000	41,752,892	121.1%
30년	36,882,000	47,900,713	129.8%	34,452,000	47,148,507	136.8%
40년	36,882,000	53,670,031	145.5%	34,452,000	52,753,096	153.1%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933,200	385,800	19.9%	1,803,600	192,900	10.6%
3년	5,799,600	3,557,100	61.3%	5,410,800	1,778,700	32.8%
5년	9,666,000	6,838,200	70.7%	9,018,000	3,419,100	37.9%
7년	13,532,400	10,229,400	75.5%	12,625,200	5,114,700	40.5%
10년	19,332,000	15,025,800	77.7%	18,036,000	7,512,900	41.6%
15년	28,998,000	23,589,000	81.3%	27,054,000	11,794,500	43.5%
20년	38,664,000	43,056,840	111.3%	36,072,000	41,518,872	115.1%
30년	38,664,000	48,738,012	126.0%	36,072,000	47,916,507	132.8%
40년	38,664,000	54,690,694	141.4%	36,072,000	53,689,285	148.8%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이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가입 나이 및 보험기간 등이 상기 예시의 기준과 다른 경우, 해지환급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의 해지환급금 등은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의 인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⑧ 유니버설특약(부가가능특약)

이 특약을 부가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추가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추가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1.0%)을 연단위 복리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하여 부리·적립합니다.
- ※ 이 특약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므로, 필수적으로 납입하여야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 ※ '무배당 함께크는 종신보험' 및 '무배당 함께크는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세법 상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어 관련 세법을 적용 받습니다. 단, '유니버설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세법 상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한도에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특약 성립 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매월 해당월까지의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5%를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합니다.
- ※ 납입한도는 해당월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의 100% 이내입니다. 다만, 추가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로 합니다. 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사업비(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를 부과합니다.
- ※ 다만, 국고채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고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로 합니다.

### 추가계약자적립금의 인출

특약의 성립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까지 추가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유니버설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 인출되며, 추가계약자적립금이 없는 경우 주계약의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기본책임준비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 ※ 각 인출시점까지의 총 인출금액(주계약의 장기유지보너스적립금 인출금액 포함)은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추가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추가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㉑ 니즈에 맞는 다양한 활용

### 실버널싱케어특약 | 간병자금

일상생활장해상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신청시마다 장기간병 선지급금 지급

- 장기간병 선지급금 : 주계약 보장금액의 10%, 15%, 20% 중 최초 신청일에 지정한 금액  
(주계약 보장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9%도 선택가능)
- ※ 장기간병 선지급금 지급시 선지급대상보험금액만큼 보장금액에서 차감(선지급대상보험금액: 장기간병 선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주계약 보장금액으로, 선지급대상보험금액 산출시 최초 장기간병 선지급금 신청일의 위험률 적용)
- ※ 실버널싱케어특약의 장기간병 선지급금 신청은 피보험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보험료가 완납된 계약에 한하며, 직전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가능합니다.(장기간병 선지급금액 총액 1인당 5억원 한도)
- ※ 실버널싱케어특약 부가시 장기간병 선지급금 지급 후 최초 신청일의 주계약 보장금액의 20%가 잔여보장금액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무배당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 | 장기간병자금

연금전환 이후에도 장기간병상태 보장

- 생존연금 : 매년 생존시 생존연금 지급(10년,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 장기간병연금 :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생존시 생존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급(최대 10년 지급)



- ※ 연금액산출시 공시이율적용(연복리 1.0% 최저보증)
- ※ 무배당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의 연금지급개시 및 전환나이는 45세~80세입니다. 무배당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실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판매중인 무배당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연금연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 노후연금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의무부가특약
- 가입 후 10년 경과시점부터 연금전환 가능
- 거주적립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전환 이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0%)로 최대 10년까지 운용한 이후 연금 개시 가능(연금개시나이 : 45세~80세)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100세보증), 확정연금(5/10/15/20년확정), 상속연금
- 보험료 납입한도 : 일시납 보험료 1,000만원 이상

# 알아두실 사항

## 1.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3. 설명의무

- 푸르덴셜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5. 청약철회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CS센터(1588-3374/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 센터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6.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7. 3대 기본원칙 지키기(품질보증해지)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8.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9.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0. 보험료 자동납부제도 안내

- 보험료 자동납부란 별도의 고지서 발행 없이 보험료 납부자의 예금 계좌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인출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려면 당사 또는 거래은행의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거나,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1.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12.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262-6565)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3.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시 유의사항

- 이 상품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유의사항

- 이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보험상품광고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소속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안내장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험 안내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속 채널을 통해 안내 받으셨을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푸르덴셜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 비전속 채널을 통해 안내 받으셨을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라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